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10. 31 선고 2024나207412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10. 31 선고 2024나207412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1. 17 선고 2023가단4793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C

변론종결 2024. 9. 12.

판결선고 2024. 10. 31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1. 17. 선고 2023가단4793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(제1심법원은 제1심공동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, 원고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위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, 확정됐다)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2쪽 제10줄 ‘공사대금(1차) 5,0000만’을 ‘총공사대금 171,000,000원, 1차 공사대금 5,000만’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2쪽 제12, 13, 15, 16줄, 제3쪽 제11줄, 제4쪽 제13, 14, 15, 20줄, 제5쪽 제1, 2, 6줄의 각 ‘피고 C’을 ‘피고’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2쪽 제12줄 ‘피고 B’을 ‘B’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3쪽 제2줄 ‘피고들이’를 ‘피고가’로, 제3줄 ‘피고들은’을 ‘피고는’으로, 제5줄 ‘피고들에게’를 ‘피고에게’로, 제8줄 ‘원고들에게’를 ‘원고에게’로, 제17줄 ‘설계라’를 ‘설계가’로 각 고친다.

○ 제4쪽 제2 내지 제4줄, 제6 내지 제12줄을 각 삭제한다.

○ 제4쪽 제17줄 ‘이 사건 소장 지급명령결정’을 ‘2023. 5. 25.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의 송달’로 고친다.

○ 제4쪽 제18줄, 제5쪽 제10줄의 각 ‘피고 C은’을 ‘피고는’으로, 제5쪽 제4, 5, 7줄의 각 ‘피고 C이’를 ‘피고가’로, 제12줄 ‘위 피고가’를 ‘피고가’로 각 고친다.

○ 제5쪽 제12줄 ‘이 판결’을 ‘제1심 판결’로 고친다.

2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.

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신진화, 판사 오재성, 판사 박양준